

# Chubb 지켜줘홈즈주택보험 for 플랫폼파트너 상품요약서

##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1) 가입자격제한

#### ①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판매합니다.

#### 가. 계약자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전자금융업자 또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 중개업자

#### 나. 피보험자

- 상기 계약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 중 해당 보험서비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신청한 자중 공동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또는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로서 각 호(戶), 실(室) 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에 거주하는 자

### (2) 상품의 특이사항

- ①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으로 합니다.
- ①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 분	보장명	지급사유	보험가입금액
기본	화재별금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때(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함 ** 형법 제170조에 의한 화재별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화재별금 : 2,000만원 한도	2,000만원
기본	주택내 일반가재 도난손해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일반가재)이 주택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1,000만원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함(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귀중품(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원고, 설계서, 소프트웨어 등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보상제외, 약관참조)	
기본	충간소음피해보장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동주택인 보험목적에서 “충간소음 <sup>주1)</sup> ”이 발생하여 소음측정결과 <sup>주2)</sup> 가 충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0만원
기본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내에 있는 6대가전제품에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자기부담금(2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함  * 6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100만원

주1) 충간소음 : 공동주택내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준하여 아래층, 위층,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충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충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충간소음의 범위)를 따름.

주2) 소음측정결과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3조(충간소음 관리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를 말함.

※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2)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① 화재별금 :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보험자에게 별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실화의 경우 1사고당 1,500만원 한도, 업무상실화, 중실화의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합니다. 단,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② 주택내 일반가재 도난손해

: 손해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시가로 결정하며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 공제)

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③ 충간소음피해 : 공동주택내에서 충간소음이 발생하고 측정결과와 충간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을 지급합니다.

④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가.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2만원)을 공제한후 보험가입금액(1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연간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보험가입금액(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나.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100만원) 내에서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3)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① 화재별금의 경우

-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 ② 주택내 일반가재 도난손해의 경우

가. 보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물건(보상하지 않음)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품 및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자동차(자동 2륜차 및 자동 3륜차 포함)

나. 보상하지 않는 사유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 전쟁, 폭동, 소요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 보험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 ③ 층간소음피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 죄행위 또는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또는 측정대행업체에서 소음측정을 하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상태
-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애,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애
-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 ④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

가.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
-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나. 보상하지 않는 사유

-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

- 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음)
-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 폐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함
- 보험목적(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2) 보험료 산출 예시

(1년, 일시납)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화재 별금	2,000만원
	주택내 일반가재 도난손해	1,000만원
	중간소음피해보장	50만원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00만원
보험료		16,060원

###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2)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①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 ② 그 밖의 해지: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5. 기타 알아두실 사항

---

Q)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이점은?

A) 보험가입금액은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보험가액은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Q)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각각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담보별로 보상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액보상담보의 경우 각각 별도로 보상하며, 실손보상담보의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예) 정액보상담보 : 층간소음피해

실손보상담보 : 화재별금, 일반가재 도난손해, 6대가전 고장수리비용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